

기술실시 계약서

특허권자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라 한다)과 실시권자인 스마프 주식회사(이하, “SMARF” 라 한다)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이라 한다)은 6개월챌린지플랫폼(주무부처:미래창조과학부, 수행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내 기술연계 사업화 지원에 따라 “KAIST” 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나노복합제너레이터 관련 기술’을 “SMARF”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실시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의 정의)

“본 계약” 상의 “기술”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등록(출원)된 특허를 말하며, 해외등록(출원)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관리번호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일 (출원일)	발명의 명칭
P-08239	10-1336229 (10-2011-0087533)	2013-11-27 (2011-08-31)	플렉서블 나노복합 제너레이터 및 그 제조 방법

제2조 (실시권의 내용)

실시권이라 함은 특허법에 따른 실시권을 말하며, 실시권의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KAIST” 는 “SMARF” 에게 “기술” 에 대하여 제3조의 계약기간 동안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을 허여한다.
- ② 본 조 제1항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을 통해 “SMARF” 는 제3조의 계약기간 동안 “기술” 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KAIST” 는 자가실시뿐만 아니라 필요시 계약기간내에 “KAIST” 와 “SMARF” 를 제외한 다른 일방(이하, “제3자” 라 한다)에게도 “기술” 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KAIST” 가 제3조의 계약기간 동안 “기술” 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소유권 양도 계약을 “제3자” 와 체결할 경우, “본 계약” 은 “제3자” 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제3자” 와의 계약 체결에 앞서 “KAIST” 는 “기술” 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소유권 양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SMARF” 에게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3자” 와의 전용실시권 또는 소유권 양도계약 이전까지 “KAIST” 에게 지급된 “기술” 에 대한 모든 실시대가는 “SMARF” 또는 “제3자” 에게 환불되지 않는다.
- ⑤ “본 계약” 종료 시 “SMARF” 는 “기술” 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SMARF” 는 “KAIST” 가 “본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고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KAIST” 는 재고품의 수량에 상응하는 경상

기술료를 “SMARF”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다른 조항에 의해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본 계약” 종료 시 “SMARF”가 “기술”을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다만, “본 계약”의 종료시점에 “SMARF”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매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일 이후에는 어느 일방의 통보가 없어도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4조 (실시지역)

“본 계약”의 실시지역은 국내로 한정한다.

제5조 (실시대가)

“SMARF”는 “기술”의 실시대가로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KAIST”에게 지급하되, “특구재단”은 선급기술료의 일부(₩28,000,000)를 다음 ①항과 같이 “KAIST”의 은행계좌인 우리은행 270-008981-01-004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① 선급기술료는 일금삼천삼백만원(₩33,000,000 부가세 포함)으로 지급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선급기술료 <small>(부가세)</small>	차금 금액	지급조건
“SMARF”	₩2,000,000	₩3,000,000	₩5,000,000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특구재단”	₩28,000,000	=	₩28,000,000 “SMARF” 납입확인 후 30일 이내
선급기술료 합계	₩30,000,000	₩3,000,000	₩33,000,000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 (우리은행 270-008981-01-004) 예금주 : 한국과학기술원

- ② 경상기술료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3.0%로 하며, 매출 발생 회계연도 기준 익월 30일 이내에 “SMARF”가 “KAIST”에게 지급하며,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제3조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 ③ “SMARF”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KAIST”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때의 연체이자율은 연 5%로 한다. 다만, “KAIST”가 인정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상기술료)

- ① “SMARF”는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생산개시일 및 매출액 발생시점과 이익발생 개시연도를 서면으로 “KAIST”에 통보하여야 하며, “SMARF”의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SMARF”에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KAIST”는 일괄소급하여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SMARF”는 경상기술료의 계산에 있어, “기술”의 실시대가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계법인(세무법인)이 발행하는 자료와 함께 “KAIST”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SMARF”는 “KAIST”가 요구하는 경우, 검증에 필요한 일체의 회계자료 및 세무자료와 공인회계사 검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연간 경상기술료의 확정은 해당 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KAIST”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출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함) 결정되며, 납부기일은 연간 경상기술료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④ “KAIST”는 경상기술료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MARF”의 회계 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SMARF”는 그 차액을 즉시 “KAIST”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KAIST”에게 기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오류 등으로 발생한 차액이 5% 이상인 경우 검사를 위한 제반비용은 “SMARF”가 부담하며, 차액에 그 지급기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제5조 제3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기산한 금액을 “KAIST”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지급은 검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⑤ 본 조 제3항의 협의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KAIST”가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에 따른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⑥ “SMARF”는 경상기술료 산정 근거자료를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관리 및 보증)

- ① “KAIST”는 “기술”에 관한 관리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② “기술”의 특허등록 유지 연차료는 “KAIST”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③ “SMARF”는 제3자로부터 “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KAIST”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KAIST”와 “SMARF”는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분쟁 및 기술적 방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SMARF”가 부담한다.
- ④ “SMARF”는 배타적권리, 즉 “제3자”의 실시에 대해 권리자와 동등한 배타적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를 행사할 수 없다.

- ⑤ “기술”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위 청구에 소요된 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제한 뒤 “KAIST”와 “SMARF”가 균등하게 분배한다.
- ⑥ “제3자”로부터의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특히 분쟁으로 인한 심판 또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KAIST”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⑦ “SMARF”는 “기술”에 대하여 그 권리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며, “제3자”가 “KAIST”를 상대로 그 권리의 효력을 다틀 경우에 “제3자”에게 협조하여야하는 아니된다.
- ⑧ “KAIST”는 “SMARF”에 의한 “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술”의 실시에 의해 “SMARF”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 지불을 포함 “SMARF”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KAIST”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⑨ “KAIST”는 “기술”의 실시로 인한 경제성이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SMARF”는 자신의 책임 하에 “기술”을 실시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개량기술)

- ① “기술”의 실시기간 중에 “KAIST”가 “기술”에 대하여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발명 등(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는 “KAIST”的 소유로 하며, 이에 대해 특약 사항이 없는 한 “KAIST”는 “SMARF”에게 유상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SMARF”가 독자적으로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SMARF”는 이를 즉시 “KAIST”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는 “SMARF”의 소유로 하며, 이에 대해 특약사항이 없는 한 “KAIST”는 무상의 실시권을 가진다.
- ③ “기술”에 대하여 “SMARF”가 “KAIST”와 공동으로 개량발명을 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그 연구개발 및 출원, 유지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SMARF”가 부담한다.
- ④ 공동소유인 “개량기술”은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또는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9조 (기술문서 제공)

“KAIST”는 “SMARF”에게 “기술”의 실시를 허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SMARF”에게 문서로 제공한다.

1. 특허명세서
2. 논문

3. 보고서
4. 기타 이전기술을 설명하는 문서

제10조 (신의 성실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KAIST”는 성의를 다하여 “SMARF”에 협조하며, “SMARF”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및 “기술”의 보호)

- ① “KAIST”와 “SMARF”는 “기술”을 비롯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되는 상대방의 기술정보, 경영정보 및 영업외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혹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논문이나 특허와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KAIST”의 일반적인 연구활동, 국가 또는 정부 관련기관의 요청, 법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 또는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의 의무는 “KAIST”와 “SMARF”의 임직원, 연구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 ② 본 조 각 항의 적용기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로 한다.
- ③ 본 조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的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AIST”와 “SMARF”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금지)

“SMARF”는 “KAIST”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나 계약 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처분(양도 또는 질권 설정 등) 할 수 없다.

제14조 (면책)

“KAIST”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SMARF”에게 “기술”의 실시 허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정보나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KAIST”는 “SMARF”가 “기술”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 ① “KAIST” 또는 “SMARF”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최고한 후 30일이 될 때까지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KAIST”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SMARF”가 제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SMARF”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SMARF”가 휴업·폐업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4. “SMARF”가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기간 동안 “KAIST”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5. “SMARF”가 제19조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통보를 위반하였을 경우.
 6. “SMARF”가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7. “SMARF”가 “기술”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8. “SMARF”가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KAIST”가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SMAR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SMARF”가 “제3자”에게 그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인수, 합병될 경우에 “SMARF”는 사전에 “KAIST”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KAIST”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KAIST”는 60일 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사정 또는 보상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 체결 당시, “SMARF”의 주주명부 상에 등재된 내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계 주주(개인, 기업, 기관 등)가 보유한 “SMARF”의 주식 지분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KAIST”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SMARF”가 외국으로부터 신규 투자 등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주를 제외한 외국계 주주(개인, 기업, 기관 등)의 합계 지분율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 “SMARF”는 사전에 “KAIST”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 ⑤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KAIST”가 “SMARF”로부터 해지 시까지 이미 지급 받은 대가는 “SMARF”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SMARF”는 해지일까지의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AIST”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 “SMARF”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 및 “KAIST”와 관련된 일체의 상표, 상호, 로고 기타 “기술”이나 귀원을 암시하는 표장을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술자료를 “KAIST”에 반환하고 계약 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 ⑧ “SMAR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 시, “SMARF”는 “특구재

단” 이 “KAIST” 에 지급한 제5조 제1항의 선급기술료를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구재단” 이 지정한 계좌에 환급시켜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KAIST” 와 “SMARF” 가 “본 계약” 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명칭사용)

“SMARF” 는 “본 계약” 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KAIST” 가 “SMARF” 에게 제공한 연구보고서나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 복제와 복사물을 광고, 판매 촉진, 기타 홍보의 목적 및 전송 상의 자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목적으로 “KAIST” 의 명칭, 로고, 기타 “KAIST” 를 나타내는 표장을 사용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KAIST” 와 “SMARF” 가 상호 합의를 통해 명칭 등의 사용 및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의 홍보)

“특구재단” 은 “본 계약” 의 일반적인 사항을 6개월찰린지플랫폼사업 성과로 홍보할 수 있으며, “KAIST” 또는 “SMARF” 가 “본 계약” 의 성과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구재단” 의 지원을 통해 성사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제19조 (중요사항의 변경)

“SMARF” 는 “본 계약” 체결 후 “본 계약” 의 계약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KAIST”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KAIST” 의 착오는 “SMARF” 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1.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대표자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3.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4. “SMARF” 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5. “SMARF” 의 대주주가 “본 계약” 과 관련된 “기술” 을 사업화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6. “SMARF” 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또는 청산,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7.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SMARF” 의 주주명부 상에 등재된 주주의 변동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계 주주(개인, 기업, 기관 등)가 새로이 포함되거나 그 지분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SMARF” 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0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상세하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요인이 소멸된 후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계약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KAIST”와 “SMARF”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계약” 이전의 “KAIST”와 “SMARF”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본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없다.

제23조 (기타)

- ① “SMARF”은 상호변경이 있을 경우, 제19조 제1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이후의 상호로 귀속된다.
- ② “SMARF”가 “제3자”에게 그 자산을 전면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SMARF”는 사전에 “KAIST”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한다.
 2. “기술”의 실시권 사용에 관하여 “KAIST”와 반드시 재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상의 “SMARF”的 권리와 의무는 인수·합병한 새로운 회사가 갖도록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KAIST”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KAIST”는 60일 간의 기한을 두고 “SMARF”와 “제3자”에게 시정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SMARF”와 “제3자”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SMARF”가 외부투자자로부터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SMARF” 또는 “투자자”가 “기술”의 사용에 대한 실시조건의 조정을 “KAIST”에게 요청할 경

우, “KAIST”는 “SMARF” 및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정에 따른 대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1. 특허등록원부, 1부

2. “SMARF”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SMARF” 주주명부, 1부
4. “KAIST”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KAIST” 기술료 입금계좌 사본, 1부

2016년 3월 17 일

“KAIST”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강성모



“SMARF”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본관 203호(원효로 1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스마프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5703057)

대표이사 채한별



“연구책임자”

교수 이건재



“특구재단”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도룡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사업자등록번호: 314-82-10460)

이사장 김차동



첨부1.

특허등록원부

특허번호	제 1336229 호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11년 08월 31일	출원번호	2011-0087533
	공고연월일	2013년 12월 16일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3년 08월 30일	청구범위의 항수	14
	유별	H02N 2/18		
	발명의 명칭	플렉서블 나노복합 제너레이터 및 그 제조방법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1년 08월 31일		
				2013년 11월 27일 등록

[특허료란]

제 01 - 03 년분 (2013.11.27 ~ 2016.11.27) 금 액 295,500 원(공공연구기관) 2013년 11월 28일 납입

[특허권자란]

(최종권리자)	
한국과학기술원 (1144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한국과학기술원(1144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
	2013년 11월 27일 등록

이하여백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일자 2014.10.16

특기사항 심사청구(무) 공개신청(무) 참조번호(14p3177)

출원번호 10-2014-0139754 (접수번호 1-1-2014-0986128-70)

출원인성명 채한별(4-2014-054487-8)

대리인성명 특허법인 다래(9-2003-100021-7)

발명자성명 채한별

발명의명칭 시설재배사 제어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특허청장

<<안내>>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로(patent.go.kr) 접속 > 민원서식다운로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결정 이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PCT 제도(특허·실용신안)나 마드리드 제도(상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일을 외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안내 : <http://www.kipo.go.kr-특허마당-PCT/마드리드>
※ 우선권 인정기간 :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 이내
※ 미국특허상표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 시, 선출원이 미공개상태이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자적교환허가서(PTO/SB/39)]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 원 번 호 통 지 서

출 원 일 자 2015.12.08

특 기 사 항 심사청구(유) 공개신청(무) 참조번호(OP15257)

출 원 번 호 10-2015-0173810 (접수번호 1-1-2015-1199181-00)

출 원 인 성 명 채한별(4-2014-054487-8)

대 리 인 성 명 특허법인아이피에스(9-2014-100021-7)

발 명 자 성 명 채한별

발 명 의 명 칭 식물 재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 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 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로(patent.go.kr) 접속 > 민원서식다운로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결정 이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PCT 제도(특허·실용신안)나 마드리드 제도(상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일을 외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안내 : <http://www.kipo.go.kr-특허마당-PCT/마드리드>
※ 우선권 인정기간 :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 이내
※ 미국특허상표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 시, 선출원이 미공개상태이면, 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자적교환허가서(PTO/SB/39)]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출원사실을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10-2010-0000000, 상표등록출원 40-2010-0000000
7. 기타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봉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12-16

【서지사항】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 상표등록출원

【권리구분】 상표

【출원인】

【성명】 채한별

【출원인코드】 4-2014-054487-8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아이피에스

【대리인코드】 9-2014-100021-7

【지정된변리사】 김미성, 한치원

【포괄위임등록번호】 2015-104318-8

【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07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농기계, 비수동식 농기구, 컨베이어(공중컨베이어는
제외), 벨트컨베이어,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
은 제외)

【상표유형】 일반상표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특허법인아이피에스 (서명 또는 인)

【수수료】